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평창군수

2015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6. 3. 31 ~ 4. 19(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이범연(총괄 평창군의회 부의장)
 - 검사위원 : 이영목(일반회계 세입)
 - 검사위원 : 고재용(일반회계 세출)
 - 검사위원 : 조상현(특별회계 세입·세출, 금고결산, 기금)
 - 검사위원 : 신종해(공유재산, 물품관리, 채권·채무)

결 산 검 사 의 건 서

평 창 군 수 귀하

2016년 4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6년 3월 31일부터 2016년 4월 19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결산 검사 위원

대 표 위 원 이 범 연 (인)

검 사 위 원 신 종 해 (인)

검 사 위 원 조 상 현 (인)

검 사 위 원 이 영 목 (인)

검 사 위 원 고 재 용 (인)

2015년도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목 차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입	4
2) 세출	5
2. 일반회계	
1) 세입	6
2) 세출	6
3. 특별회계	
1) 세입	7
2) 세출	8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9
2) 채권	9
3) 채무	10
4) 공유재산	10
5) 물품	11
5. 세입·세출외현금	11
6. 검사결과	12
7.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13

2015년도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5년도의 평창군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를 비롯하여 7개 기타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이 월 액
전 년 도 (2014)	439,665,399,398	460,721,001,962	452,468,197,776	1,326,808,930	6,925,995,256
해당연도 (2015)	471,117,492,757	484,508,195,097	477,191,450,207	1,125,732,380	6,191,012,510

가. 세입결산 개요

- 2015년도 수납액은 477,191,450,207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로 나타남.

※ 2014년도

- 실제수납액 : 452,468,197,776원

(세입예산액 대비 103%, 징수결정액 대비 98%)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2014)	376,740,820,000	61,549,582,148	603,197,250	771,800,000
당 해 연 도 (2015)	420,631,242,000	49,660,894,907	212,205,850	613,150,000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0	439,665,399,398	369,564,800,512	50,486,250,757	19,614,348,129
0	471,117,492,757	366,730,607,944	91,402,152,258	12,984,732,555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420,631,242,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50,486,250,757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71,117,492,757원임.
- 지출액은 366,730,607,944원으로 예산현액의 78%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㉑)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 대비 율
		계 ㉒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14)	439,665,399,398	50,486,250,757 (100,000,000)	18,983,992,316 (100,000,000)	4,241,888,391	27,260,370,050	11.5%
당 해 연 도 (2015)	471,117,492,757	91,402,152,258 (1,891,877,000)	43,947,671,448 (1,391,877,000)	4,448,119,050	43,006,361,760 (500,000,000)	19.4%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

(단위 : 원)

구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년도 (2014)	348,606,600,198	366,998,047,367	360,487,439,061	1,326,808,930	5,183,799,376
당해년도 (2015)	376,828,767,567	388,350,758,728	382,166,217,453	1,125,181,670	5,059,359,605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382,166,217,453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1%이고, 징수결정액은 388,350,758,728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임.

※ 2014년도

- 실제수납액 : 360,487,439,061원 (세입예산액의 103%)
- 징수결정액 : 366,998,047,367원 (세입예산액의 105%)

2) 세출

(단위 : 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년도 (2014)	305,248,283,000	41,983,319,948	603,197,250	771,800,000
당해년도 (2015)	350,416,829,000	25,586,582,717	212,205,850	613,150,000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0	348,606,600,198	307,780,399,564	26,411,938,567	14,414,262,067
0	376,828,767,567	299,637,323,701	64,999,340,028	12,192,103,838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350,416,82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411,938,567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76,828,767,567원임.
- 이월사업비는 자금없는이월 1,891,877,000원을 포함하여 64,999,340,028원으로 예산현액의 17.2%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현액 대 비 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14)	348,606,600,198	26,411,938,567 (100,000,000)	17,370,336,806 (100,000,000)	3,645,154,391	5,396,447,370	7.6%
당해년도 (2015)	376,828,767,567	64,999,340,028 (1,891,877,000)	40,144,326,578 (1,391,877,000)	4,321,349,370	20,533,664,080 (500,000,000)	17.2%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3.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이 월 액
전 년 도 (2014)	91,058,799,200	93,722,954,595	91,980,758,715	0	1,742,195,880
당해년도 (2015)	94,288,725,190	96,157,436,369	95,025,232,754	550,710	1,131,652,905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95,025,232,754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이며, 징수결정액은 96,157,436,369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임.

※ 2014년도

- 실제수납액 : 91,980,758,715원 (예산현액의 101%)
- 징수결정액 : 93,722,954,595원 (예산현액의 102%)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2014)	71,492,537,000	19,566,262,200	0	0
당 해 년 도 (2015)	70,214,413,000	24,074,312,190	0	0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0	91,058,799,200	61,784,400,948	24,074,312,190	5,200,086,062
0	94,288,725,190	67,093,284,243	26,402,812,230	792,628,717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70,214,41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074,312,19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4,288,725,190원임.
- 이월사업비는 26,402,812,230원으로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현액 대 비 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14)	91,058,799,200	24,074,312,190	1,613,655,510	596,734,000	21,863,922,680	26%
당 해 년 도 (2015)	94,288,725,190	26,402,812,230	3,803,344,870	126,769,680	22,472,697,680	28%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17,397,700,654	994,640,764	1,889,958,884	895,318,120	18,392,341,418
통합관리기금	8,201,085,494	- 32,793,461	164,757,929	197,551,390	8,168,292,033
사회복지기금	4,909,740,697	756,841,249	847,329,649	90,488,400	5,666,581,946
체육진흥기금	3,221,347,770	268,431,647	280,431,647	12,000,000	3,489,779,417
식품진흥기금	112,511,431	1,396,356	46,868,776	45,472,420	113,907,787
재난관리기금	953,015,262	764,973	550,570,883	549,805,910	953,780,235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로서
기금현재액은 전년도 17,397,700,654원 보다 994,640,764원이
증가한 18,392,341,418원을 관리하고 있음.

2) 채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5,761,968,807	104,534,466	606,360,054	5,260,143,219
일반회계	4,426,798,615	37,181,838	352,762,543	4,111,217,910
특별회계	462,417,800	0	184,100,632	278,317,168
기 금	872,752,392	67,352,628	69,496,879	870,608,141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5,761,968,807원에서
- 104,534,466원이 발생, 290,779,349원이 소멸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260,143,219원임.

3)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7,371,000,000	7,382,000,000	10,000,000,000	2,618,000,000	0	24,753,000,000
일반회계	17,371,000,000	6,382,000,000	9,000,000,000	2,618,000,000	0	23,753,000,000
기타회계 (수질개선)	0	1,000,000,000	1,000,000,000	0	0	1,000,000,00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 17,371,000,000원에서
 - 발생액은 10,000,000,000원이며, 2,618,000,000원이 소멸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753,000,000원임.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말현재액	증감(△)
용도별	합 계	2,302,822,064,717	2,398,820,531,548	95,998,466,831
행정 재산	계	2,248,823,231,678	2,344,681,595,829	95,858,364,151
	공용 재산	186,609,320,982	189,644,152,070	3,034,831,088
	공공용재산	2,055,627,655,404	2,148,451,188,467	92,823,533,063
	기업용재산	6,563,554,292	6,563,554,292	0
	보존용재산	22,701,000	22,701,000	0
일반 재산		53,998,833,039	54,138,935,719	140,102,680

가.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전년도말 2,302,822,064,717원에서
95,998,466,831원이 증가한 2,398,820,531,548원으로

- 토지 128,180,560㎡ / 490,751,805,411원
- 건물 209,913㎡ / 320,681,797,664원
- 기타 1,491,355건 / 1,587,386,928,473원임

5) 물 품

(단위 : 개,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당해연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 환,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57종	수량	892	47	11	58	14	48	62	880
	금액	7,358,085	628,678	257,732	886,410	48,341	186,817	235,158	7,913,539

가. 당해연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358,085,000원보다 555,454,000원이 증가한 7,913,539,000원임.

5. 세입 · 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1,444,824,390	- 57,176,275	4,360,795,364	4,417,971,639	1,387,648,115
보 증 금	434,493,890	- 49,171,610	325,945,000	375,116,610	385,322,280
보 관 금	768,571,827	31,314,090	3,840,100,663	3,808,786,573	799,885,917
잡종금등기타	241,758,673	- 39,318,755	194,749,701	234,068,456	202,439,918

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87,648,115원으로 전년도말 1,444,824,390보다 57,176,275원이 감소함.

※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금액임.

6. 검사결과

□ 총 평

-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를 비롯하여 7개 기타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 평창군 직원들의 노력으로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7% 상승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보비 확보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등으로 예산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처리에 미흡한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회계관련 교육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 실제수납액은 382,16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8,35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세출예산액은 350,416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41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76,828백만원으로 지출에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나타났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 세입결산액은 95,02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093백만원임.

○ 세입세출외현금은

- 현재액 1,3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평창군 채무비율은(지방채무액 24,753/총예산 420,631)로 5%로서, 지금까지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유지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재정자립도상 자립도는((지방세 23,206 +세외수입 10,538)/총예산 420,631) 8%로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하고, 향후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채권·채무액을 경감하고 불요불급사업을 억제하여 지속적인 지방부채 최소화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금회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15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의견서

지 적 (건의 · 수범사례)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비 고
1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2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3	지방 채무·채권 경감으로 지방부채 최소화	
4	평창문화예술재단 기금조성 부실	
5	행정하자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6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철저	
7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 및 관리철저	
8	세입예산 없는 징수결정	
9	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액 관리 철저	
10	HAPPY700시네마 사업비 과다계상	
11	지방세 등 납세의식 제고 및 체납액 해소방안 추진	수범사례
12		
13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

○ 제 목 :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 할 수 있으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준비와 예측미흡 및 추경예산(제3회)편성 등으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

□ 검사자 의견

- 향후 일반적인 이월사유(공기부족, 토지보상지연 등)외에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현황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매년 최종추경(3회추경) 편성 시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요구됨.

이 월 사 업 내 역

(금액 : 천원)

연도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당 부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159	62,924,582	100	37,840,684	28	2,008,297	31	23,075,599	전부서
2014	148	50,486,251	97	18,983,992	29	4,241,888	22	27,260,370	
2015	242	91,402,152	178	43,947,671	37	4,448,119	27	43,006,362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2

○ 제 목 :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 현 황

-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문제점

- 보조금 총 집행잔액 현황은 1,814,570천원으로 거의 모든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검사자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확보한 국도비를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반납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보조금 반납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비고
소 계	1,814,570	1,364,202	450,368	
문화관광과	86,019	60,164	25,855	
주민생활지원과	542,542	451,877	90,665	
종합민원과	2,116	2,116	-	
자치행정과	35,516	33,008	2,508	
재 무 과	2	-	2	
경제체육과	185,677	175,388	10,289	
환경위생과	113,146	79,114	34,032	
산 림 과	79,061	60,383	18,678	
안전건설과	4,434	-	4,434	
도시주택과	3,968	3,615	353	
보건의료원	88,586	80,163	8,423	
농 축 산 과	334,226	247,168	87,058	
기술지원과	331,599	163,528	168,071	
상하수도사업소	7,678	7,678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3

○ 제 목 : 지방 채무·채권 경감으로 지방부채 최소화

○ 현 황

- 평창군의 2015년 회계연도말 지방채무 채권액은 37,913백만원으로서 이중 ①채무액은 24,753백만원, ②채권액은 5,260백만원 ③잠정 채무액은 7,900백만원임

① 채 무 액

(단위 백만원)

지역개발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차입내용	금액	차입	금액	차입	금액
소계	9,500	소계	10,000	소계	5,253
2006 수해복구	3,500	2015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개선	5,000	2016 고금리 차환 (지방교부세감액분)	5,253
2010 종합스포츠타운	5,000	동계올림픽 도시경관조성	4,000		
2010 송천생태하천조성	1,000	동계올림픽 하수시설 확충	1,000		

② 채 권 액

(단위 백만원)

소계	5,260
공무원학자금대여	2,259
주택융자	278
주택개량	1,849
사회복지기금	871
전화선예치	3

③ 잠정 채무액

(단위 백만원)

소계	7,900
사회복지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 문제점

- 지방재정지표상 예산대비 채무비율은($\frac{\text{지방채무잔액}}{\text{총 예산}}$) 25% 초과시 「주의」 40% 초과시 「심각」으로 판단되는바, 평창군 채무비율은($\frac{\text{지방채무잔액 } 37,913}{\text{총예산 } 420,631}$) 9%로서, 지금까지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유지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재정자립도상 자립도는($\frac{\text{지방세}(23,206)+\text{세외수입}(10,538)}{\text{총예산}(420,631)}$) 8%로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하고, 향후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평소 지방채무·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경감책이 필요함.

□ 검사자 의견

- 2015년 발생된 18,511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채권·채무액을 경감하고 불요불급사업을 억제하여, 지속적인 지방부채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4

○ 제 목 : 평창문화예술재단 기금조성 부실

○ 현 황

-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취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예술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평창문화원, 이효석문화재단 위원회, 가산문학선양회, 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 평창송어축제위원회와 무이예술회관, 덕거연극인촌, 감자꽃 스튜디오 등의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시설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대의기구로서 2012. 06. 21 발족되었음.
- 2013. 05. 10 평창군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창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음.
-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은, 2013 ~ 2019년(7년간)까지 100억원(평창군 출연금 70억, 기부금 30억)을 목표로, 매년 14.3억원(출연금 10억, 기부금 4.3억원)정도가 적립되어야 하나, 2013 ~ 2015년까지 기금조성액은 다음과 같음

총목표액 (2013~2019)			목표액(A) (2013~2015:3년)			조성액(B)			목표미달액 (A-B=C)		
계	출연금	기부금 (자부담)	계	출연금	기부금 (자부담)	계	출연금	기부금 (자부담)	계	출연금	기부금 (자부담)
100	70	30	42.9	30	12.9	21	20	1	21.9	10	11.9

- 평창문화예술재단의 2014~2015년 평창군에서 재정지원한 지원금은 210,000천원으로서, 이중 운영비 115,000천원은 인건비 74,000천원(64%) 사무비 41,000천원(37%)로서 대부분 인건비로 집행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95,000천원으로서 사업건수는 6건임.

○ 문 제 점

- 평창문화예술재단의 2013 ~ 2015년까지 기금조성액은 21억원으로서 기금조성액이 극히 미달되어 재단설립의 목적달성이 심히 우려되며, 현재 재단의 운영은 평창군의 재정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검사자 의견

-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기금조성은 목표액에 비례하여 조성액이 극히 부실하므로, 향후 기금조성 가능성, 사업성, 중복성,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강구가 요구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5

○ 제 목 : 행정하자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 현 황

- 공무원의 민원증명 발급 부적정, 각종 인허가시 관련 법령 착오 적용 등 행정하자로 인한 민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14년 4건(민사소송 3, 행정소송 1) 소송가액 3,040백만원과 2015년 18건(민사소송 15, 행정소송 3) 소송가액 509백만원과 아직까지 미확정 소송가액을 포함하면 매년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검사자 의견

- 향후 민원증명서류의 부적정 착오발급, 인허가 관련 법령 착오적용 등 행정하자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결재권자의 면밀한 검토와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재정손실 충당을 위한 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가 요구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6

○ 제 목 :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철저

○ 현 황

-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예산대비비율		비고
				B/A	C/A	
지방세	23,206,094	29,263,215	26,813,089	126	116	
세외수입	10,538,261	17,679,295	14,644,879	168	139	
- 도로사용료	58,480	184,786	180,076	316	308	
- 하천사용료	229,624	312,176	307,460	136	134	
- 기타사용료	510,920	428,097	288,852	84	57	
- 증지수입	183,466	477,370	477,286	260	260	

○ 문 제 점

- 그러나 2015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은 116%수납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85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보수적인 세입예산추계를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군비부담폭 증에 대비, 가용재원을 미리 비축한 점은 인정되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제도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 임.
- 특히, 세외수입의 일부과목의 경우 최고 308%까지 차이도 나고 있음.

□ 검사자 의견

- 세입예산 추계의 부정확한 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사항으로 철저한 자료관리와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과소·과대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7
- 제 목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 및 관리철저
- 현 황

(단위:원)

구분	계	평창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소계	57,270,680	6,748,760	3,138,950	12,052,190	10,555,070	2,466,990	22,308,720
2015년	19,816,830	638,410	-	-	10,555,070	2,466,990	6,156,360
2014년 이전	37,453,850	6,110,350	3,138,950	12,052,190	-	-	16,152,360

○ 문 제 점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및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및 징수업무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음.
- 2015년도의 경우 100% 징수한 미탄면, 방림면을 제외하고 6개 읍·면에 15건 19,816,830원을 체납하였고, 2014년도 이전은 4개 읍·면에 45건 37,453,850원으로 총 체납액이 60건 57,270,680원임.
- 이는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경과 대부분 민원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할 요소를 갖고 있음.

□ 감사자 의견

- 군에서는 읍·면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지도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8
- 제 목 : 세입예산 없는 징수결정
- 현 황

(단위: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고
재산매각수입	0	0	0	153,892	153,892	
·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	0	0	0	116,296	116,296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0	0	0	37,595	37,595	

○ 문제점

- 도유재산의 매각을 승인받아 매각할 경우 평창군 귀속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에 반영하거나 징수결정 후 추경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도유재산 매각귀속금 116,296천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7,595천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없는 징수결정을 하고 결산한 사실이 있음.

□ 감사자 의견

- 도유재산 등의 매각으로 세입예산 반영 요소가 발생 시 사전 세입예산 반영토록하며 불가 할 경우 추경 또는 정리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9
- 제 목 : 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액 관리 철저
- 현 황

연 도	건수	체납액	구성비(%)
계	7,125	2,574,461	100
2005년도 이전	784	158,127	6
2006~2010년도	1,691	614,806	24
2011년도	688	310,047	12
2012년도	764	231,113	9
2013년도	847	505,054	20
2014년도	954	425,216	17
2015년도	1,397	330,098	13

○ 문 제 점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과년도분 결손 처분을 살펴보면 5,293백만원 중 1,124백만원 21%를 결손처분하여 체납액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지방세는 2,358백만원중 692백만원, 29%를 결손처분한 반면, 세외수입은 2,935백만원 중 14.8%인 432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세외수입의 결손처분비중이 규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임.
- 결산검사시점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7,125건 2,574백만원의 체납액을 갖고 있음.
-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이전의 체납액만도 784건 158백만원으로 1건 평균 21만원이며 특히, 주정차과태료의 경우 94~99년에 30건, 7,764

천원의 체납액을 관리하는 등 소액체납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체납액 관리에 비용과 인력이 크게 소요되고 있음.

□ 검사자 의견

-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록 압류 등 채권확보가 된 체납일지라도 압류된 물건의 선채권의 규모, 차량의 연식 등,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관리에 선택과 집종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0

○ 제 목 : HAPPY700시네마 사업비 과다계상

○ 현 황

- 사업비 1,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150, 군비1,050)
- 지출액 1,132백만원
- 잔 액 268백만원

○ 문 제 점

- 2015.12.22 용평면 장평리 374번지에 개관한 HAPPY700평창시네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다하게 사업비를 계상하여 1,400백만원중 1,132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68백만원 발생

□ 검사자 의견

- 국도비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의 경우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군차원의 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국도비 재원비율보다 군비 재원비율을 현저하게 과다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결산검사 수범사례

□ 수범사례

○ 관리번호 : 11

○ 제 목 : 지방세 등 납세의식 제고 및 체납액 해소방안 추진

○ 현 황

□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계	2015년	과년도	비 고
합 계	2,458,236	1,372,645	1,085,591	
주민세	97,376	45,694	51,682	
재산세	894,467	493,788	400,679	
자동차세	1,066,268	593,748	472,520	
지방소득세	337,530	239,315	98,215	
폐지 도시계획세	6,279	-	6,279	
폐지 사업소세	15,943	-	15,943	
폐지 종합토지세	40,373	100	40,273	

-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 2012년도 590,472,580원, 2013년도 871,078,910원 2014년도 821,888,950원, 2015년도 721,934,050원 등 4년 연속 5억 이상을 징수하였으며

- 또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월체납액을 2012년도 2,787,422,370원에서 2013년도 2,463,740,320원으로 2014년도 2,334,719,840원, 2015년 다소 1억 증가한 2,458,235,930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특히 2015년도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면서 각종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지급결정요건에 지방세,세외수입 완납유무를 확인하도록 반영하여 제한함으로써 성실납세의식을 향상시켰으며
- 또한 경리부서 대금지급 시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확인은 그동안 계속 되어 왔으나 각실과 일상경비지출 시에도 지방세,세외수입 완납확인하도록 제도화 하여 체납액 해소에 기여하였음
- 그 결과 2013년도,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강원도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하여 3연패를 달성하였음

○ 검사자 의견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등에 예산수요가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지방세,세외수입 미수액을 최소화 하여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기를 바랍.